

의성군 고시 제2020 - 127호

의성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287-7번지 일원에 「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 증축 사업」을 위한 군관리계획(환경기초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0. 19.

의 성 군 수

1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「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 증축 사업」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

2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가. 환경기초시설

1) 하수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 면 표 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단북1	하수종말처리시설	단북면 이연리 287-3번지 일원	6,716	증) 31	6,747	경상북도 고시 제2005-189호 (2005.7.7)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단북1	하수종말 처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면적 증가 - A = 6,716m² → 6,747m² 증) 31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계하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적경계 일원화를 위해 지적 공부정리에 따른 면적 변경

3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: 붙임과 같음(도면계재 생략)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4.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(054-830-6344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